

● 제303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
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(의안번호 2823)

2021. 12. 17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이정인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번호 2823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안자 : 이정인 의원 외 13명 발의
- 나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5일
- 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
2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장애인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의 기능(안 제5조)
- 나. 장애인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의 설치 및 운영지원(안 제7조)
- 다. 장애인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제정안의 취지

- 본 조례 제정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,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음.
- 제정안은 14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 - 먼저,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, 정의규정(안 제2조)에서는 “장애인공동생활가정(그룹홈)”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에서 사회통합과 자립을 목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로 정의하고 있음.
 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, 사업운영의 주체(안 제4조), 그룹홈의 기능(안 제5조), 이용대상자(안 제6조), 그룹홈 설치 및 운영지원(안 제7조),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(안 제8조), 조직 및 구성(안 제9조), 운영위원회(안 제10조), 운영의 위탁(안 제11조), 센터에 대한 지원(안 제12조), 보고 및 조사(안 제13조), 시행규칙(안 제14조)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.

〈조례안의 조문 배열〉

제1조(목적)	제8조(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)
제2조(정의)	제9조(조직 및 구성)
제3조(시장의 책무)	제10조(운영위원회)
제4조(사업운영의 주체)	제11조(운영의 위탁)
제5조(그룹홈의 기능)	제12조(센터에 대한 지원)
제6조(이용대상자)	제13조(보고 및 조사)
제7조(그룹홈 설치 및 운영지원)	제14조(시행규칙)
	부 칙

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총칙규정(안 제1조~안 제3조)

-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(안 제1조)과 정의(안 제2조),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,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,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조례안에서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,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.

나. 장애인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사업의 지원(안 제4조~안 제7조)

- 조례안 제4조에서는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운영의 주체를 사회복지법인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, 조례안 제5조에서는 그룹홈의 기능으로 ▲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, ▲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여가생활 지원, ▲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지원, ▲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유대강화지원, ▲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, 조례안 제6조에서는 그룹홈 이용대상자를 규정하고, 조례안 제7조에서는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이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룹홈의 기능 및 이용대상자 등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.

다. 장애인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지원센터(안 제8조~안 제13조)

- 조례안 제8조~제13조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사업, 그룹홈 역량강화 사업 등 장애인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
- 조례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▲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, ▲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, ▲대체인력지원에 관한 사업, ▲그룹홈 이용상담 및 이용대상자 선정 지원, ▲지역사회 소규모 거주시설로의 서비스이용 전환 지원, ▲그룹홈에 필요한 자원연계, ▲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 자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조례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조례안 제10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.
- 또한, 시장의 조직편성권에 해당하는 위원회 설치·구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반대의견이 없는 바, 위원회 설치·구성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.
- 조례안 제11조~제12조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센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, 조례안 제13조는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바, 이는 센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됨.

라. 그 외 규정(안 제14조)

- 조례안 제14조는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.

마. 집행부의견 : 원안동의

- 집행부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업의 지원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취지 및 목적 등을 감안하여, 조례 제정에 동의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3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, 장애인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바,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문 의 처

류민국 입법조사관 (02-2180-8140)

□ 참고자료 :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그룹홈지원센터 운영 현황

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현황

- 이용대상 :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
 - 낮시간 동안 근로, 고용훈련,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
 -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
 -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

○ 시설현황 : 183개소(지원 174, 미지원 9)

(2021.1월 기준)

지원여부	시설수 (개소)	운영 개소수(개소)		이용자 수 (명)	종사자 수 (명)
		거주형	자립형		
계	183	172	11	694	182
지 원	174	164	10	655	173
미지원	9	8	1	39	9

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 운영 현황

- 위 치 :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 2층(강남구 도곡로 416)
- 규 모 : 센터장 포함 5명
- 운영주체 :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협회
- 주요사업 : 입소상담, 종사자 및 이용자 교육, 대체인력사업 지원 등
- 2020년 사업추진 실적
 - 대체인력 지원 142개소(2,426건)
 - 종사자 권역별·분기별·온라인 교육 실시(8회 268명)
 - 긴급방역물품지원 및 자원연계를 통한 시설 환경 개선 등 (695건)
 - 찾아가는 이용자 개별 지원 및 건강교육(70건)